[서식 예] 중도금 등 반환청구의 소

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중도금 등 반환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,000,000원 및 20〇〇. 7. 1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피고와 20〇〇. 〇. 〇. 피고 소유의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-〇〇 대 120㎡ 및 그 지상 단층주택(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)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원으로 하고,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10,000,000원, 같은 해 5. 30에 중도금 40,000,000원 나머지 잔금 50,000,000원은 같은 해 7. 30.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키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- 2. 원고는 계약내용대로 계약당일 금 10,000,000원, 중도금 지급기일에 금 40,000,000원을

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,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자기앞수표로 금 50,000,000 중에 준비하여 지급하려 하였으나 위 잔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 전 확인해본 하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중도금지급 다음날인 5. 31. 소외 ◈ ◈ ◈에게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을 알게되었습니다.

- 3.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할 것인바, 원고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같은 해 6. 30.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계약해제 및 피고가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하였으며, 그 통고서는 같은 해 7. 1. 피고에게 도달되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을 계속 미루고만 있습니다.
- 4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 금 50,000,000원 및 위계약의 해제통고서가 피고에게 도달된 20〇〇. 7. 1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

1.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1. 갑 제3호증 통고서(내용증명우편)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 ○ ○ . ○ . ○ . 의 원고 ○ ○ ○ (서명 또는 날인)

관 할 법 원	※ 아래(1)참조	소 멸 시 효 기 간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포·*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 및 기 간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기 타	만 가지고는 매매계이행이 불능이라는 니라 사회생활에 있 때 채권자가 채무지 법원 1996. 7. 26. 선 · 매수인은 매대목적들로서는 신의칙 등에 론이 하고, 로 레이어 등이 하다 보이는 이 하고 이유로 이 아파트서 위 매매에 연소하게 본안소송에서 경우에는 대학원이 해결할 수 있을 분집행이 유지되고 여 위 매계약을 수 있을 분집행이 유지되고 여 위 판결). · 채무의 이행이 불어 가 아니라 채권자가 말한다. 이행이 불어 내지인의 되어 이를 이유로 미의 기 매도인의 소	기약이 법률상 이행 것은 단순히 절대적 어서의 경험법칙 또 의 이행의 실현을 인고 96다14616 판결 문에 대하여 가압류 가 불가능한 것도 여 의해 대금지급채두 가 의해 대금지급채두 가 의해 대금지급채두 가 의해 대금지급 채두 가 의해 대하여 채권자 수 등소하여 채권자 소유권이 성실할 때 사 소유권을 상실할 때 와 있다는 점만으로 없음이 의 기가는 점만으로 없음이 의 기가는 점인 당신의 의 기가 대매계약상의 소 내매계약을 해제함에 유권이전등기의무역	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불능이라고 할 수 없고, 채무의적,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(대). 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매매에 따아니므로, 이러한 경우 매수인으로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된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계약는 없음(대법원 1999. 6. 11. 선고의 가처분집행이 되어 있다고 해불가능한 것도 아니고, 다만 채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수 있으나 이는 담보책임 등으로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의 이번이므로 매수인으로서는 위 가처래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대법원 1995. 4. 14. 선고 94다 회절대적・물리적으로 불능인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게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지급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이 아님(대법원 2003. 1. 24. 선고

₩ 대한법률구조공단

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